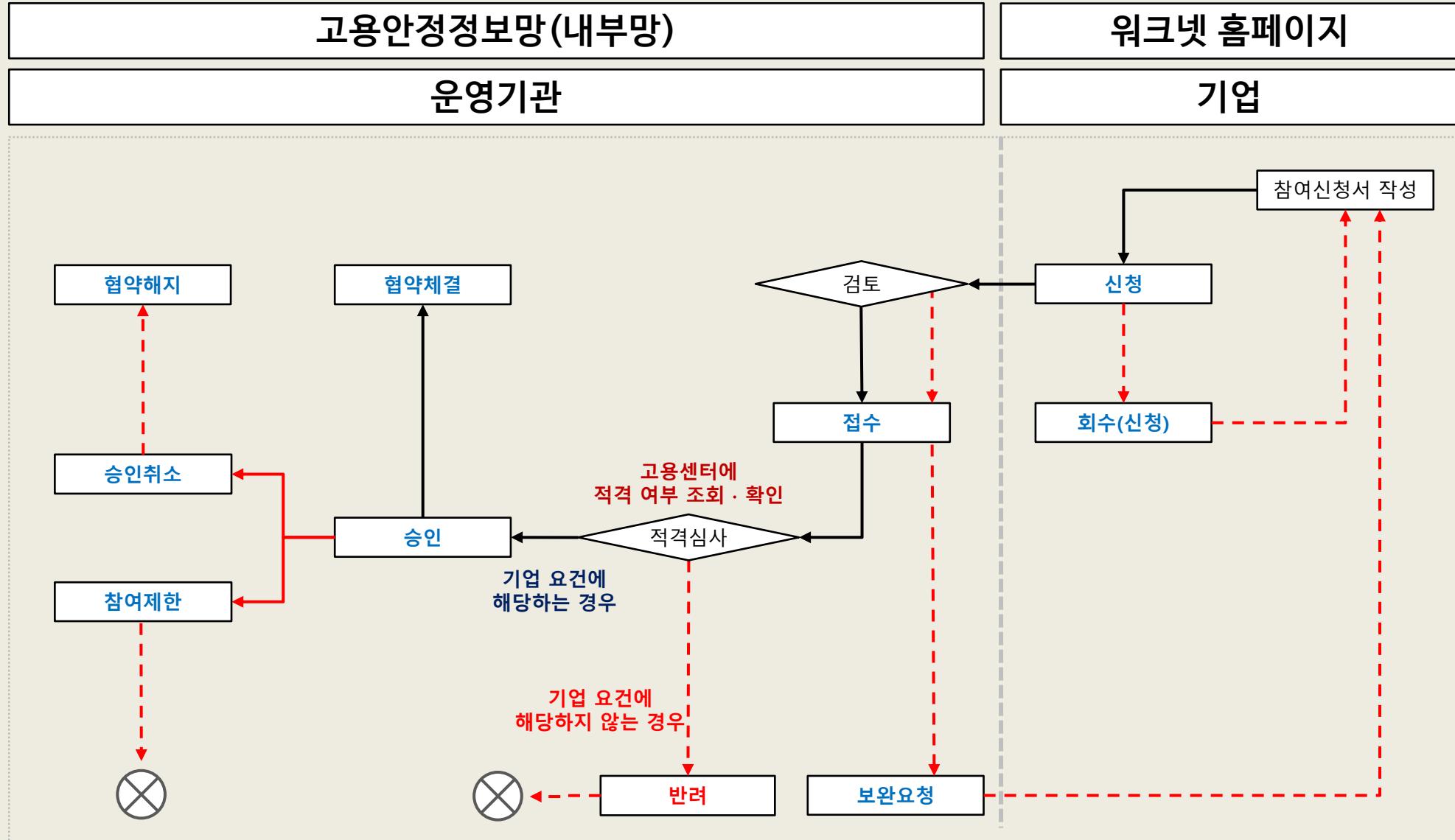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2023.01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1 참여신청서 처리 절차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

기업명	한국고용정보원
지사명	
대표자	
소재지	충청북도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지원금관리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신청 현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1명)

[상세보기](#)
변경신청
2

운영기관	처리상태 승인	신청일자 2022-12-28	승인일자 2022-12-28
협약체결상태	협약체결	협약체결일자 2022-12-28	

3
반려·보완 사유

2022년도 사업참여 신청
2023년도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참여신청

- 22.10.1.~22.12.31. 에 계약직 채용 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2년에 청년을 채용하여 3개월 이내인 23년에 사업참여 신청한 경우 22년 사업지침 적용
- 그 외 23년 사업참여 신청(23.1.9~작성가능)

변경신청

- 참여기업은 입력한 담당자정보, 채용계획에 대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 담당자가 변경신청 내용 확인 후 승인처리 시 변경내용 반영

반려·보완사유

- 운영기관에서 참여신청서를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하였을 경우, 요청 사유 확인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참여신청서

- *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 저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메모장 등에 먼저 작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운영기관 선택

담당 운영기관* 화성상공회의소

① 운영기관찾기

▶ 대표 사업장 현황

사업연도 2022 *사업연도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사업장명 한국고용정보원

기업유형*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지사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업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
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② 관리번호찾기

소재지 (27740) 충북

피보험자 합계* 33 명

설립일 2001-01-01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운영기관 및 대표 사업장

(필수) 운영기관 찾기

- * 운영기관찾기 클릭 후 “화성상공회의소” 클릭
* 등록된 운영기관 중 “온라인신청가능여부”
가 신청가능인 운영기관

(필수) 관리번호 찾기

- 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되는 유효한 고용보험사업장 목록 제공

관리번호 찾기에서 선택한 고용보험사업장 정보 (업종, 소재지, 피보험자 수*)

- * 피보험자 수 :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
(단,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 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
※ 피보험자 수는 수정 불가 (조회된 값을 그대로 사용)

- 참여 신청서 하단에 있는 참여자격 제한 사유(지원제외 기업, 지원제외 청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업장**
 - 대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업장에 추가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사용됩니다.
 -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기준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가 조회됩니다.
 - 단,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가 조회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은 참여신청서에 작성된 사업장의 성립일 중 가장 과거의 성립일 기준
- 기준 피보험자 수**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에 수도권 기업의 경우 50%,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최대 30명)

▶ 관련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업종			
피보험자 합계	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관리번호찾기"/>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	
소재지			<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관련 사업장 현황

(선택)관련 사업장 작성

- 1
- 관리번호 찾기로 관련 사업장 추가 가능
 - 대표 사업장 등으로 등록한 사업장은 관련사업장으로 등록 불가
 - 피보험자 수 :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
(단,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

▶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장 합산)	<input type="text"/>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1
지원한도*	<input type="text"/> 명	※ 기준 피보험자 수(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조회,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사업개시일*	<input type="text"/>	매출액*	<input type="text"/> 원
매출액 시작일*	<input type="text"/>	매출액 종료일*	<input type="text"/>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2.4.1.이어서 증빙하는 과세 대상기간이 22.4.1.~22.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
- 기업은 2021년, 2022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기준 피보험자 수,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소수점 이하 올림)
※ 수정 불가

(필수) 수도권 기업여부

- 대표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설정
※ 기업에서 직접 수정 가능

지원한도

- 수도권 기업여부가 수도권인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
- 수도권 기업여부가 비 수도권인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소수점 이하 올림)
※ 수정 불가

매출액 (23년도 지원조건 추가)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값 보다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종료일 - 매출액 시작일)} X 365
- 기업은 21,22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업력 1년미만은 매출액 심사 없음(사업개시일 기준 체크)

1

▶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기업 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2

▶ 채용계획

채용예정인원*

1 명

근로계약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40 시간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2,400,000 원
2,400,000 원

항목삭제

채용예정인원*

1 명

근로계약형태*

기간제계약

근무시간*

주 40 시간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2,400,000 원
2,400,000 원

항목삭제

3

+ 항목추가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기업구분, 채용계획

기업 구분

- 기업에서 해당하는 기업구분을 직접 선택

※ 시스템에서 정확한 해당 여부를 제공하지
않으니, 오프라인으로 확인하시길 바람
- 일부 구분에 대하여 '해당' 여부 조회 가능

채용계획

-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월급여 작성

* 근로계약형태 :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채용계획 항목추가

- 최대 10개까지 추가 가능

채용자 정보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	이길동	채용일	20221001	항목삭제
항목추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 - 1234 1234	팩스번호	선택 - -
이메일*	test naver.com	기타(직접입력)*	

첨부서류 등록

첨부서류	<p>※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p> <p>※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p> <p>※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용량 : 10MB 이하)</p> <p>※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 jpg, jpeg, bmp, png, ppt, pptsx,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파일입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찾기"/> <input type="button" value="선택파일삭제"/>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채용자 정보, 담당자 정보, 첨부서류	<p>채용자 정보</p> <p>1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체크 → 채용자 성명, 채용일 등록 가능</p> <p>채용자 정보 항목추가</p> <p>2 등록할 채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항목추가를 선택 후 채용자 정보 추가 작성 가능</p>
첨부서류 란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업로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요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예 아니요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예 아니요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증인 사업주

 예 아니요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종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예 아니요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예 아니요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예 아니요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예 아니요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예 아니요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확인서 (기업)

지원제외 기업

1 · “예”를 선택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침 내 확인서가 변경될 경우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④ 기간의 경합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칙계 존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금 받거나 지금 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협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 반환을 명령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등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아니오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확인서 (청년)

지원제외 청년

· “확인”을 선택하지 않은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신청 불가

※ 지침 내 확인서가 변경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여,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			
전화번호*	010	- [] -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input type="radio"/> 동의합니다.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임시저장"/> <input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 margin: 0 10px;" type="button" value="참여신청"/> <input type="button" value="목록"/>			

1

2

3

요약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화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임시저장, 참여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
- 사업주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침 내 동의서가 변경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사업주의 경우 선택

- (필수입력) 사업주명,法人등록번호, 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사유

참여신청

- 필수항목(*)이 모두 작성된 경우 신청 가능
(참여신청서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3 채용계획 내 채용예정인원 합이 지원한도보다 큰 경우 신청 불가

- 채용계획 내 채용예정인원 합계와 동일 사업주가 신청한 참여신청서 내 채용예정인원 합계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알림 제공